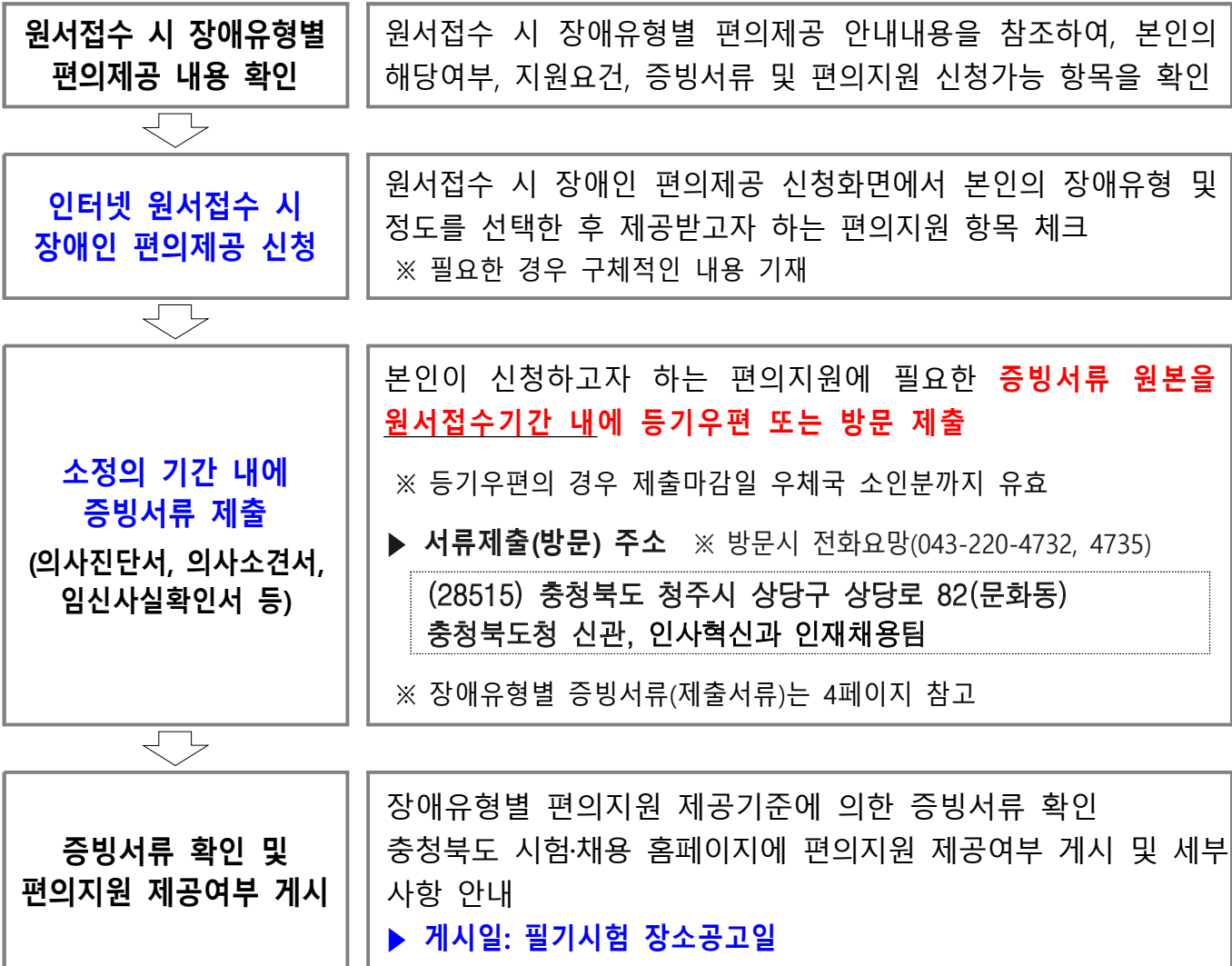


붙임 1 장애유형별(임신부 포함) 편의지원 제공 안내

1. 편의지원 제공 대상

- 2026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
 - ①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로서,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
 - ② 기타 특수중복장애,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
 - ③ 임신부, 과민성 대장·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

2. 편의지원 신청 절차



3. 편의지원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

- [참고1]의 '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(4페이지)'에서 본인의 편의 제공 대상 여부,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「장애인복지법」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,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- (의사진단(소견)서 제출 시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가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하게 인정됨)
-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중 충청권 공동출제 및 충청북도 자체출제 시험과목은 음성지원컴퓨터, 점자문제지, 점자답안지, 축소문제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 컴퓨터, 점자문제지, 대필 등의 편의지원을 신청한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신청 입력란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,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.
 - ※ 단, 장애인 구분모집단위가 있는 공개경쟁임용시험(9급)*에서는 **장애인 모집단위에서만 시험시간 연장 편의지원이 제공됩니다.**
 - * (1회 공개경쟁) 행정9급, 세무9급, 전산9급, 사회복지9급, 사서9급, 농업(일반농업)9급, 보건9급, 방송통신9급
 - ※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하였더라도 장애인 모집단위가 아닌 일반 모집단위로 원서접수한 경우에는 시험시간 연장이 불가합니다.
-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「의료법」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 종합병원)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.([참고3]의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)
 - ※ 다만, 임신부의 경우에는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.
 - ※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 여부(소재지)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→ [병원·약국 찾기]에서 조회 가능(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)

- 2024년과 2025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서류제출을 면제합니다.
 - ※ 단, 해당 서류 발급일이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이어야 함
-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편의지원 항목 중 ‘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’ 항목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제공이 가능합니다.
 - ※ ‘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’에 대한 세부 운영방법은 시험별 별도 안내 예정
- 편의제공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는 해당 시험 필기시험 장소공고 시 공고할 예정이오니, 응시자 중 편의제공 신청자는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신청 후 지정된 기한 내에 증빙자료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, 시험진행 일정상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문의사항은 사전에 충청북도 인사혁신과 인재채용팀(043-220-4732, 473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**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** **필기시험**

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지원 내용	증빙서류 (각1부)	비 고	
지체장애	상지	공 통	-		
	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) · [선택형 시험] 답안지 대필	-	기존 1~3급
	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	·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	-	기존 4~6급
	하지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/ 심하지 않은 사람	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-	기존 1~6급
뇌병변장애	공 통		-		
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		-	기존 1~3급	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) · [선택형 시험] 답안지 대필	의사 진단서 (원본)	기존 4~6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		·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	-	
시각장애	공 통		-		
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	· 좋은 눈의 시력이 0.04이하인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7배) · 음성지원컴퓨터	-*	기존 1~2급
		·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· 점자문제지, 점자답안지 (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) ·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	의사 진단서 (원본)	기존 3급 2호
		· 좋은 눈의 시력이 0.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)	-	기존 3급 1,2호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	·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7배) · 음성지원컴퓨터 · 점자문제지, 점자답안지 (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) ·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	의사 진단서 (원본)	기존 4급 2호
		·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)	-*	
		· 좋은 눈의 시력이 0.2이하인 사람		-*	기존 4,5급 1호
		· 두 눈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%이하로 감소한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)	-*	기존 5급 2호
		· 나쁜 눈의 시력이 0.02이하이고,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이하인 사람		의사 진단서 (원본)	기존 6급 중 좋은 눈시력 0.3이하
		·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-	기존 6급

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지원 내용	증빙서류 (각1부)	비 고
청각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자/ 심하지 않은 사람	· 수화통역사 배치 ·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-	기준 2~6급
기타	특수 및 중복장애 · 일시적 신체장애	·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	검토 후 안내	
	임신부	· 높낮이 조절 책상 · 시험 중 화장실 사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 확인서 (원본)	
	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	· 시험 중 화장실 사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의사진단서 (원본)	

* 해당 항목 장애유형(기등급 등)의 조회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- 확대문제지 : A3 규격의 118%, A2 규격의 150%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
- 확대답안지 :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2종류 중 택1
- 축소문제지 : A4 규격의 82%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

※ 일부 과목의 경우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 등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

참고 2	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	면접시험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장애유형		편의지원 내용
지체장애	상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험도우미 지원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· 관련서식 확대 제공
	하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험도우미 지원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· 엘리베이터로 이동가능한 층 배치
뇌병변장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험도우미 지원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· 엘리베이터로 이동가능한 층 배치 · 면접위원과의 거리 1.5m 내외로 가깝게 조정 · 관련서식 확대 제공
시각장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험도우미 지원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· 관련서식 확대 제공
청각장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험도우미 지원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· 보조공학기기 착용 허용 · 면접위원과의 거리 1.5m 내외로 가깝게 조정 · 관련자료 등 서면제공
기 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애유형과 정도, 편의제공의 필요성과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

※ 면접시험 관련 편의제공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안내 및 접수

참고 3 의사진단(소견서) 발급 시 유의사항

- 발급기관: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**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**
 - ※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의 [병원·약국찾기]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**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**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 - ※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·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(통원)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불인정
 - ※ 다만, **임신부의 경우**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
- 발급일자: 해당 시험 **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(원본)**

구 분	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	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
응시원서 접수마감일	2026. 3. 27.(금)	2026. 7. 24.(금)
진단서(소견서) 발급일	2024. 3. 28. 이후	2024. 7. 25. 이후

- 의사진단서(소견서)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
 -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* 시각장애의 경우,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
 -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
 -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 -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

예시) 점자문제지, 시험시간연장,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
- "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"

-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(소견서)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(소견서)에 의함

[의사진단서(소견서) 예시]

장애유형 및 정도		예 시	※ ① ~ ③ 반드시 기재
시각 장애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①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로서 나쁜 눈 0.02 이하, 좋은 눈 교정시력 0.3이하로, ②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, ③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지원이 필요	
뇌병변 장애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①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로서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되어, ② 시험 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③ 확대답안지, 시험시간연장의 편의지원이 필요	
임신부		① 2025년 7월 20일 분만 예정인 임신 32주된 단태아를 임신한 산모로서 ② 자궁의 확대에 의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어 ③ 별도시험실 배치, 시험 중 화장실 사용 등의 편의지원이 필요	
기 타		①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② 시험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	

※ **시험시간 연장, 대필**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**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(소견서 불인정)**